

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함께 신청해보세요!

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

“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
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
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.”

✓ 지원요건

- 이혼·미혼 등으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,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
-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(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)이 있는 경우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생계급여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
- 가구의 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
- 다음 ①에서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
 -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,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,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
 -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(외)조부모인 경우
 -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,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 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
 - 난방, 전기,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

✓ 지원금액

자녀 1인당 월 20만원 (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지원)

✓ 지원기간

9개월(필요시 3개월 연장)

면접교섭 서비스

- **면접교섭 중재**
면접교섭에 관한 중재·합의 지원
 - **면접교섭 상담**
양육자·비양육자·자녀의 심리상담 및 면접교섭과 관련된 코칭
 - **면접교섭 모니터링**
지속적, 자발적 면접교섭을 위한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독려 지원
 - **집단 면접 프로그램**
비양육자와 자녀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(상담·교육·체험활동) 제공
- ※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

오시는 길



지하철

- 서초역(2호선) 6번출구(국립중앙도서관 방향) 도보 15분
- 서초역(2호선) 7번출구 마을버스(서초13, 서초21) 타고 서울성모병원에서 하차
- 고속터미널역(3호선, 7호선, 9호선) 5번출구(서초역 방향) 도보 10분

버스(서울성모병원에서 하차)

- 간선버스 405, 740 • 지선버스 5413
- 마을버스 서초13, 서초14, 서초21

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

1644-6621

서초구 반포대로 217(서울지방조달청) 5층
www.childsupport.or.kr

여성가족부 | 평등을 일상으로



양육비이행관리원
Child Support Agency

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
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함께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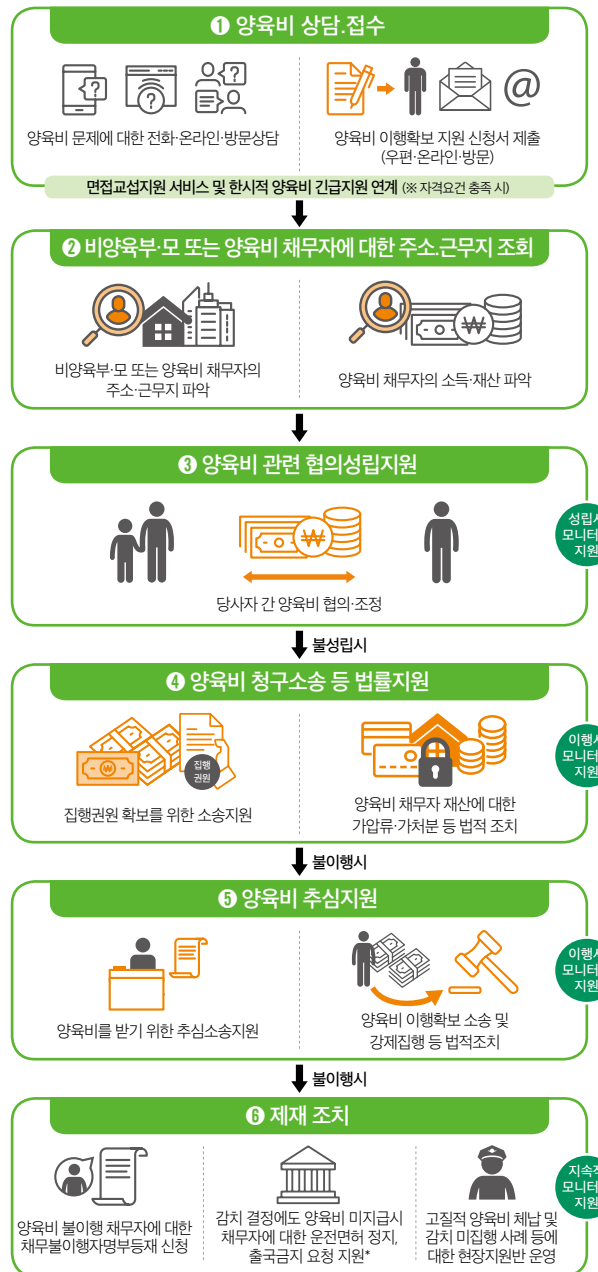
한국건강가정진흥원
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

양육비이행관리원은?

-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설치되었습니다.
- 양육부·모(양육비 채권자)의 1회 신청만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종합 지원합니다.
- 양육부·모(양육비 채권자)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관련 상담, 협의성립, 소송, 추심,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법률지원을 합니다.
- 안정적,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 확인, 미이행 독려 및 추가 법조치 상담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-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자녀와 비양육부·모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비양육부·모-자녀 관계개선,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양육비 관련 홍보·교육·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'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을 위해 꼭 지급되어야 한다'는 인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

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절차



*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일부 개정(‘21.6.10., ‘21.7.13. 시행)



서비스 신청 대상

- 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
- ‘한부모가족지원법’에 따른 자녀* 양육 한부모·조손가족
* 취학중인 만22세 미만 자녀,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 (만22세 미만 + 군 복무기간) 양육 한부모·조손가족

※ 이혼 한부모 뿐만 아니라 미혼 한부모도 지원
- 미혼모 부는 인지청구(자녀와 친부·모의 법률상 부모자 관계 형성)부터 지원



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

- ① 온라인 홈페이지(www.childsupport.or.kr) 자료실 - ‘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’ 서식 출력
- ② ‘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’ 및 추가서류 필수 제출 (등기우편, 방문)
우)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(서울지방조달청)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



양육비에 관한 상담 방법

- 전화/방문상담 ☎1644-6621(1번)
평일 09:00 ~ 18:00(주말, 공휴일 제외)
※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로 운영

- 온라인상담 www.childsupport.or.kr

※ QR코드를 스캔하시면
더 많은 정보를 확인
하실 수 있습니다.

